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56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2

I. 개요

1.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1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5.
-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김기현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조의2(분원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외의 지역에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u> <u>② 국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원 설치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동법 제5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노인성질환, 희귀난치질환, 감염병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중앙치매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 삭제<2018.3.13.>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원 설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최근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많은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통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35개소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지역별 지방의료원 현황 >

(단위: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	1	1	1	7	5	2	4	3	3	4	1	2	35

* 종합병원 30개소, 병원 5개소

** 자료: 보건복지부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및

감염병 등 분야에 있어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분야별 중앙센터, 정책 지원 및 교육·임상 기능을 강화해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¹⁾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별 필수의료 강화 기능은 권역별·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개요 >

- 위치 : (現) 을지로 → 서울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 (42,277㎡)
- 규모 : (現) 499병상(감염병병원 포함)
→ 776병상 (본원 526, 외상센터 100, 감염병병원 150)
- 추진현황
 - 건축
 - 사업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 확정('22.12, 기재부)
 - 총사업비 토대로 설계 진행중('23.9. 설계착수, '26년 초 설계완료 예정)
 - 설계
 - 기본설계 (계약체결 '23.8. / 기간 '23.8~'24.12)
 - 실시설계 예정 ('25.4~'26.2)
 - 공사
 - '26년 상반기 공사입찰 및 착공 예정
 - '28년 완공 예정

*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있고,²⁾ 지방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정책³⁾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책을 보다

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중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국립병원에는 분야별 중앙센터, 정책 지원 및 교육·임상 기능을 강화해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역할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 지난 3월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2024년 7월 현재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운영 중임.

3)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노후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비추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출연금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매년 400~5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개정안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분원 설치에 대한 지원이 추가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 제3조의2제3항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해당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4)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추계번호 24C0425)>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재량규정인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분원의 설치 여부, 설치 지역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개정안은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 추계가 곤란하다는 입장임(2024.06.19.).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는 지역별 공공병원 수요 및 공급 현황,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분원 설치 비용 등 세부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신축·이전을 추진 중이므로, 우선, 새 병원의 위상·기능 정립 후, 분원 설치 등 필요성은 향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국립중앙의료원은 2028년까지 이전·신축을 통해 기능·조직 등을 확충할 예정으로, 감염병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의 기능강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 포괄적·항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해당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유사 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동 개정안의 분원 설치 주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